

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
제243회 임시회 (2020. 9. 9.)

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검토보고서



**행정건설위원회
전문위원 최국모**

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검 토 보 고

1. 제출경위

- 가. 의안번호: 20-113
- 나. 제출자: 마포구청장
- 다. 제출일자: 2020년 8월 25일(화)
- 라. 회부일자: 2020년 8월 26일(수)

2. 제출사유

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조성된 기금의 융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융자금을 증액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을 작성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동 계획안 변경의 건을 제출함.

3. 주요내용

코로나 19 재난으로 인하여 가장 피해가 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기금 융자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이에 대비하고자 전입금 10억 원을 증액하고자 함.

4. 관련법규

- 가.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
- 나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3조

5. 검토보고

- 동 안건은 마포구 중소기업의 시설 자금, 운전 자금 융자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비 지원 목적으로 설치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이 변경되어

이를 반영하고자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에 근거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되었음.

- 제출사유를 보면, 올해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19 바이러스 재난으로 심각한 경제침체를 초래하고 있고 이에 따른 중소기업체 및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필요한 시설자금, 운전자금의 적기 공급을 위해 기금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2020년 8월 말 현재 당초 예산의 약 90%를 융자금으로 소진하고 있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전입금으로 10억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동 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함은 물론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사료됨.
- 다만, 이러한 대책은 필요 최소한의 대응으로 보이며 사회적 거리두기 2.5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생존이 벼랑 끝에 몰려있는 소상공인, 자영업자들에 대한 일시적인 지원보다는 이들의 경영체질을 개선하고 코로나 이후 비대면 경제 시대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다 근본적인 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.

참고로 소상공인 진흥공단의 ‘최근 4년간 폐업 지원금 지원 현황’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올 해 상반기 폐업지원금 신청자 수는 4,526명으로 지난해 연간 신청자(6,503명)의 70%를 넘긴 상태로 나타나고 있어 우리 경제의 주춧돌 역할을 하는 자영업의 몰락이 현실화되고 있는 실정임.

【참고 자료】

1.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현황
2.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

【참고 자료-1】

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현황

□ 기금개요

- 설치근거 :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3조
- 설치연도 : 1993년
- 재원조성 : 출연금, 이자수입 등
- 기금 조성 현황

(단위 : 백만원 / 기준 : 2020.8.31.)

조성액 (A+B)	기대출금 (A)	보유액		
		계(B)	공금예금	정기예금
12,826	9,778	3,048	1,048	2,000

□ 사업개요

- 조성규모 : 3,000백만 원
- 신청기간 : 연중 수시
- 금리 : 1.0%
 - 코로나19로 인하여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금리 인하함(기준 1.5%)
- 지원한도 : 3천만 원 ~ 2억 원
- 지원대상 : 관내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자
- 절차



□ 응자실적

- 마포구 중소기업 육성기금
 - 응자잔액 : 300백만 원(2020.8.31.기준)

(단위 : 백만원 / 기준 : 2020.8.31.)

연도	2015년	2016년	2017년	2018년	2019년	2020년
응자규모	3,700	3,700	3,700	3,200	3,700	3,000
업체수	21	7	21	22	22	22
응자금액	2,308	1,070	2,940	3,160	3,054	2,700

【참고 자료-2】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제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. <개정 2015. 7. 24.>

1.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
2.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
3.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
2. 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

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.